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4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 조배숙 • 곽규택 • 유상범

송석준 • 박성훈 • 고동진

김 건 · 신동욱 · 주진우

백종헌 · 장동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5년"을 각각 "7년"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u>두</u>)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	
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	
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	
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	
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	
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7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	②
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	
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u>에 처한다.

<신 설>

④ (생략)

<u>7년</u>
③
<u>3년 이상의 유</u>
<u>기징역</u>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